

## □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고환경 변호사 | 01  
이일신 변호사  
강준모 박사

### I. EU 인공지능법(EU AI Act)

### II. 미국의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

### III. 영국의 친혁신적 AI 규제 수립을 위한 정책보고서 및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백서

### IV. 시사점

## □ 주요 통상일지

| 10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초거대·생성형 모델 등 AI 기술의 빠른 발달로 AI가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OpenAI의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는 인간과 텍스트로 대화하는 챗봇 형태의 서비스를 넘어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인식하고 생성하는 멀티모달 모델<sup>1)</sup>로 진화하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기술 확산의 이면에는 차별 문제나 프라이버시 침해,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의 양산, 일자리 감소 등 AI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AI 윤리기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적 논의가 최근 AI의 위험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로 본격 전환되면서,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AI 관련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국내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영국에서 개최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참가국들은 AI의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설명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위험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블레츨리 선언문(Bletchley Declaration)'에 서명하였습니다.<sup>2)</sup> EU에서는 올해 3월 13일 인공지능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행정명령과 백서 발표 등 AI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AI의 역기능을 통제하면서도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각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AI 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의 AI 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글로벌 AI 규제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I. EU 인공지능법(EU AI Act)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EU AI Act(이하, **EU 인공지능법**) 초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ChatGPT 등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들이 출시됨에 따라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 EU 이사회 주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EU 내 150개 이상 기업들이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3자간 협의(trilogue)를 통해 마침내 2023년 12월 8일 생성형 AI 규제를 포함한 EU 인공지능법 최종안에 합의하였고, 올해 2월 2일에는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종안을 승인한데 이어, 3월 13일에는 유럽 의회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였습니다. 공개된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AI 시스템의 정의

EU 인공지능법에서는 AI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배포 이후에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신된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sup>3)</sup>

2023년 6월 채택된 유럽 의회 수정안<sup>4)</sup>과 비교하면, 위 정의는 AI 시스템이 배포 이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고, 단순히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고환경 변호사

T. 02-2191-3057  
E. [hwankyoun@leeko.com](mailto:hwankyoun@leeko.com)

약력보기 ▶



이일신 변호사

T. 02-772-5982  
E. [ilshin@leeko.com](mailto:ilshin@leeko.com)

약력보기 ▶



강준모 박사

T. 02-6386-0744  
E. [joon.kang@leeko.com](mailto:joon.kang@leeko.com)

약력보기 ▶

'추론'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결과물에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의 정의는 OECD가 제시한 AI 시스템 정의의 주된 개념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AI 시스템과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생성형 AI가 AI 시스템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제12조에서는 자연인이 정의한 규칙에 따라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단순한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방식은 AI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 적용 대상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EU 내에서 출시 또는 서비스하거나 범용 AI 모델 (general-purpose AI models)을 EU 내에서 출시하는 제공자(providers)<sup>5)</sup>, EU 내에 위치한 AI 시스템의 배포자(deployers)<sup>6)</sup>, AI 시스템의 수입자(importers) 및 유통자(distributors)<sup>7)</sup>, 자신의 제품과 함께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AI 시스템을 출시 또는 서비스하는 제품 제조자(product manufacturers), 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제공자의 공인 대표자(authorised representatives), EU 내에 위치한 영향을 받은 자연인(affected persons)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에 위치한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의 산출물이 EU에서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면 본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편, EU 인공지능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EU 회원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군사, 방어 또는 국가 안보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연구 및 개발만을 위하여 출시, 서비스되는 AI 시스템 또는 모델과 그 산출물은 본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AI 시스템 및 모델이 출시되거나 서비스되기 이전의 연구, 테스트 또는 개발 활동<sup>8)</sup>에 대해서도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금지되는 AI 시스템

잠재의식의 조작, 취약점 악용, 인종·정치적 의견 등을 추론하거나 유추하는 생체 인식 분류, 사회적 분류 평가(social scoring),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프로파일링 또는 성격 특성 평가만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 위험 평가·예측, 안면 이미지의 스캐핑, 직장과 교육 기관에서의 감정 추론에 관한 AI 시스템은 금지됩니다.

2023년 6월의 유럽 의회 수정안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과 달리, 최종 통과된 법률에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 또는 테러 공격의 위협에 대한 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4. 고위험(high-risk)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EU 인공지능법은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① 부속서 I에 열거된 유럽 연합 조정법(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의 적용을 받는 제품<sup>9)</sup>의 안전 구성 요소이거나 제품 그 자체이면서, ② 해당 유럽 연합 조정법이 제품의 출시 및 서비스를 위해 제품에 대한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더하여, 부속서 III에서 언급된 AI 시스템 역시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의 예로는 사후 원격 생체인식시스템, 감정 인식 시스템, 핵심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교육·직업 훈련, 채용·인사관리, 필수적 서비스의 접근·향유, 사법과 민주적 절차의 집행, 이민·난민·출입국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부속서 III에서 언급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해당하더라도, 좁은 절차적 작업(narrow procedural task)을 수행하거나, 이전에 완료된 인간 활동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경우, 인간의 평가를 대체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III에서 언급된 AI 시스템이 자연인의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6월의 유럽 의회 수정안과 달리, 최종 통과된 법에서는 사후 원격 생체인식시스템을 금지된 AI 시스템이 아닌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하면서, 그 배포자에 대해 행정기관 승인 등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 의회 수정안은 디지털 서비스 법(DSA) 제33조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의 유저 생성 콘텐츠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천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도 별도로 고위험 AI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속서 III에서 명시하였으나, 최종 통과된 법률의 부속서 III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문서 작성, 기록 보존, 투명성, 인적 감독, 품질관리시스템, 접근성, 적합성 평가, 기본권 영향 평가 등 규제가 적용되며, 제공사, 배포자 등 각 주체별로의 의무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5.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의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의도된 AI 시스템,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감정인식 시스템, 생체정보 기반 범주화 시스템, 딥페이크 생성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AI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사실, 이용자들이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하는 투명성 의무가 부과됩니다.

## 6. 범용 AI 모델 규제

EU 인공지능법의 제정 과정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 의회의 2023년 6월 수정안에서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파운데이션 모델(기반 모델)<sup>10)</sup>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이에 대한 치열한 협의 과정 끝에, 최종 유럽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서는 범용 AI(General-Purpose AI, 이하, GPAI) 모델에 대한 규제(제 51 조 내지 제 56 조)가 규정되었습니다.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체 감독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를 포함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고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다양한 고유 작업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로서 연구, 개발 또는 시장 출시 전 프로토타입 활동에 사용되는 AI 모델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sup>11)</sup> GPAI 모델에 대한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up>12)</sup>

- **일반 GPAI 모델** : GPAI 모델에 대해서는 기술 문서 작성,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요약본 배포, GPAI 모델을 자신들의 AI 시스템에 통합시키려는 제공자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제공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술 문서 작성 의무와 GPAI 모델을 자신의 AI 시스템에 통합시키려는 제공자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제공 의무는 무료 및 오픈 라이선스 하에 출시되고 매개변수가 공개된 AI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위험이 있는 GPAI 모델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이 있는 GPAI 모델** : 총 10<sup>25</sup> FLOPs<sup>13)</sup>를 초과하는 누적 계산량을 이용하여 훈련된 GPAI 모델은 시스템 위험<sup>14)</sup>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sup>15)</sup>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사용자 수 또는 자율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위험을 가지는 GPAI 모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위험을 가지는 GPAI 모델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 등 모델 평가 수행, 시스템 위험의 평가 및 완화, 중대사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AI Office 및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 GPAI 모델과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 7. AI 규제 샌드박스

EU 인공지능법은 EU 회원국들이 본 법률의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AI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AI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혁신적인 AI 시스템의 개발, 교육, 테스트 및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공익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을 개발, 교육 및 테스트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최종 통과된 법률에서는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환경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8. 위반시 제재

AI 시스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GPAI 모델에 관한 규정의 위반,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의무 및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위반의 경우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시행 후 첫 1년 동안은 과징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 9. 시행일

EU 인공지능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발효한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금지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발효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GPAI 모델에 관한 조항은 발효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조항은 3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EU 인공지능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모든 GPAI 모델 제공자는 발효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본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0. 평가

EU 인공지능법은 리스크 기반으로 AI 유형을 구분하여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하여 강도 높은 일괄(omnibus)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AI 기술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소비자 기본권 보호 및 EU 역내의 통상 보호 측면에서 AI 규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EU 인공지능법 최종안 합의 이후 2023. 12. 11. 연설에서 EU 인공지능법으로 인하여 EU의 테크 기업들이 영국, 미국, 중국의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sup>16)</sup>

향후 EU 인공지능법이 시행되면 EU 외의 국가에 위치한 AI 기업들도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AI 개발 단계부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과 같이 EU 인공지능법 역시 글로벌 AI 규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적합성 평가 시 제출되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는 AI 시스템의 일반 로직, 주요 설계 사항, 기술적 솔루션 등이 포함된 시스템 설계 사양(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system)이 포함될 수 있는바, AI 시스템 관련 기술의 공개 및 유출에 관한 이슈도 향후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II. 미국의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이하, AI 행정명령)’<sup>17)</sup>

미국은 EU와 달리 AI 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3. 10. 30. AI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방기관들의 범정부 차원의 AI 규제 프레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행정명령은 8가지 원칙(Guiding Principles)을 포함하면서 연방정부와 관련 기관이 준수하고 실행하여야 할 지침, 규정,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원칙	주요 내용
안전과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무부 장관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통하여 레드팀 테스트기준 등 AI시스템의 안전, 보안,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도구 등을 개발</li> <li>이중 용도기반 모델(dual use foundation model)<sup>18)</sup>을 개발하는 기업이 연방정부에 AI 모델 훈련 및 레드팀 테스트 결과를 제공</li> <li>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미국 IaaS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상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수립</li> </ul>
혁신 및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 분야의 AI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여 AI 연구를 촉진</li> <li>소규모 개발자와 기업자에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li> <li>AI 등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기준 및 인터뷰 등을 간소화</li> </ul>
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의 잠재적인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li> <li>직장에 배치된 AI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고용주를 위한 원칙 및 모범사례 개발</li> </ul>
형평과 시민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사법 시스템에 AI를 사용하는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공정성을 보장</li> <li>AI와 관련된 시민권 침해해 조사하고 기소하는 모범사례를 교육하는 등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성을 방지</li> </ul>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분야에서의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 등을 촉진</li> <li>교육 분야에서의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AI에 관한 정책 등을 개발</li> </ul>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우선적 지원</li> <li>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 AI 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지침 강화</li> </ul>

연방 기관의 AI 사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의 AI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li> <li>■ 정부 차원의 AI 전문가 채용을 가속화</li> </ul>
국제관계 리더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와 관련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li> </ul>

AI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이루어진 주요 조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sup>19)</sup>

- 이중 용도 기반 모델 개발자가 상무부에 AI 안전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핵심 정보를 보고할 것이 강제됨
- 상무부가 외국 사업자의 AI 학습을 위해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는 미국 IaaS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을 정한 규칙 초안<sup>20)</sup>을 발표함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광범위한 혁신과 경쟁, AI 연구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pilot of the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를 출범함

미국의 AI 행정명령은 시장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며 혁신의 지속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통한 표준 제정을 통해 AI 보안과 안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법률 준수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고성능 AI에 대해서는 레드팀을 통해 인공지능의 시스템 결함 및 취약점을 찾도록 하는 실증적인 접근을 하며, 혁신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해외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 각 기관이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 등을 공표하기 전에는 그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하여 향후 제정될 표준, 지침 등은 우리나라의 TTA 등 표준 제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 행정명령에 따른 AI 관련 규정들의 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III. 영국의 친혁신적 AI 규제 수립을 위한 정책보고서 및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백서

영국은 EU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AI 관련 규제에 대한 친혁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AI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EU 인공지능법과 달리 영국은 AI 관련 규제의 입법을 시도하지 않고, AI 활용 분야에 따라 기존의 규제

부처에서 관련 규범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관련 규제 설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2022년의 '친혁신적 AI 규제 수립을 위한 정책 보고서'와 2023년의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백서입니다.

#### 1. 친혁신적 AI 규제 수립을 위한 정책 보고서<sup>21)</sup>

해당 보고서는 EU 인공지능법과 같이 AI 시스템에 대한 고정된 정의를 제시하는 대신 AI가 공통적으로 갖는 핵심 특징을 학습 결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의도나 논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적응력'과 복잡한 인지적 과업을 자동화하여 명확한 의도나 인간의 통제 없이도 의사결정을 한다는 '자율성'으로 규정하고, 각 규제기관이 소관 분야의 특성에 맞게 더 자세한 정의를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법고, 친혁신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영국의 AI 규제 수립의 주요 특성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규제 (Context-Spec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는 범용 기술로, AI의 위험은 주로 활용 과정에서 발생</li> <li>■ 특정 맥락에서 AI 활용 및 개인/조직/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반 규제</li> </ul>
친혁신적이며 명백한 위험에 기반한 규제 (Pro-innovation, Risk-ba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적이고 식별 가능하며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AI 활용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위험 수준이 낮거나 가상의 위험에 대한 AI 활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하지 않음</li> </ul>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된 규제 (Coher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수립</li> <li>■ 규제기관이 소관 영역에서 공동 원칙을 해석하여 적용</li> </ul>
비례적이며 융통성 있는 규제 (Proportionate, Adap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응력 확보를 위해 공동 원칙을 비법적인 방식으로 적용</li> <li>■ 규제기관은 지침 또는 자발적 조치와 같은 가벼운 방식을 고려</li> </ul>

한편, 개별 맥락에 따른 규제가 가질 수 있는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AI 규제 공통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규제 공통 원칙	
공통 원칙	주요 내용
안전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기관은 활용 맥락에 맞게 AI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평가/관리</li> <li>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은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실제 위협에 상응해야 함</li> </ul>
기술적 안정성, 설계대로 작동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의도하고 주장하는 바를 안정적으로 수행</li> <li>AI 시스템의 기능, 복원력,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규제기관은 영역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해야 함</li> </ul>
투명성, 설명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성에 대해서는 AI의 속성 및 목적, 활용 중인 데이터 및 데이터 학습에 관한 정보, 활용 중인 논리와 프로세스, 결과의 설명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정보, AI가 산출한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포함</li> <li>일부 고위험 영역에서 AI 시스템이 설명 불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AI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li> </ul>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기관은 소관 분야의 맥락에 맞게 공정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필요사항을 설계/구현/실행</li> </ul>
법인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인된/확인 가능한 법인이 AI가 생산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님</li> </ul>
규제/항변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환경 외부의 개인과 집단이 AI에 의한 의사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li> </ul>

## 2.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백서<sup>22)</sup>

해당 백서는 AI 규제를 단시일 내에 법제화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면서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이행 원칙 및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규제기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프레임워크 이행 원칙 및 주요 내용	
이행 원칙	주요 내용
안전, 보안, 강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li> <li>(규제기관) 기술적으로 안전한 AI를 구현하고 AI가 생애주기를 통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li> </ul>
투명성, 설명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성) 이용자에게 AI에 관한 정보(사용 목적, 방법, 시기 등) 제공</li> <li>(설명가능성) AI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접근, 해석, 이해</li> <li>(규제기관) 규제지침 마련 등 투명성 보장 지원 및 이행방안 마련, AI의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보장</li> </ul>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에 의한 권리 침해, 불공정한 차별, 불공정한 결과 도출 금지</li> <li>(규제기관) 소관 분야별로 공정성에 대한 설명자료 마련, 관련 법령 및 표준 등에 관한 지침 개발</li> </ul>
책임,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생애주기에서 책임 명확화, AI의 공급과 활용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필요</li> <li>(규제기관) 규제 이행 및 선례 안착 방법을 강구하고 거버넌스 절차 이행 장려</li> </ul>
규제/항변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나 제3자가 AI로 인한 피해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li> <li>(규제기관) 이의제기/구제절차 명확화 및 이의제기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li> </ul>

## 3. 평가

영국은 AI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딥마인드 등으로 대표되는 AI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비례적인 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AI 규제를 위한 별도의 규제 기관을 신설하거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 AI 안정성을 확보하되 영역별·규제 기관별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여 시장의 혁신을 장려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상원의원인 Christopher Holmes는 2023년 11월 22일 AI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AI를 개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AI 책임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규제) 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Bill)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sup>23)</sup> 비록 개인 의원의 발의로 충분한 추진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과정에서 전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규제 또는 분야별 규제 입법이나, 이에 준하는 추가 조치와 도입되지 않는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IV. 시사점

이렇듯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사정에 맞는 AI 규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AI 기술이 투입되는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과 AI 서비스가 미국, EU 등 규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U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EU 인공지능법의 준수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기업들은 EU 인공지능법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 문서 작성, 보안체계 구축 등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AI 행정명령상 규제 내용도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되어 안정성 평가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중 용도 기반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미국에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AI 행정명령에 따라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국제 통상규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등 첨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 자체를 필요로 하는데, 데이터의 국경간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와 AI의 안전성 등 정당한 공공목적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그런데, AI를 특정적으로 다루는 국제 통상규범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국제통상규범은 AI 시대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AI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규율하기에는 규범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AI는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상품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AI를 내재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품 분야의 TBT 협정 등과 같이 상품/서비스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기존 통상법 규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 국가들은 FT나 디지털통상규범에 AI에 특화된 구체적인 규범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련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서 신뢰성, 안전성, 책임성이 보장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한다는 원칙 수준의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AI 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통상법적 함의를 지니는 규율 체제의 확립은 디지털 통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불가피할 전망이므로 이에 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간 규범 형성 과정에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인공지능의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 법안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 기술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EU의 인공지능법에서와 같이 시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예측하여 이를 옴니버스식으로 무분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미국과 영국의 규제 방향과 같이 민간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규제기관의 AI 관련 이해도 증진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정책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의 AI 행정명령이 완전히 새로운 규제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닌 AI 관련 15개 기업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AI 기술·산업진흥과 역기능 해소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 
- 1) OpenAI가 2024. 2. 15. 공개한 '텍스트 투 비디오' 서비스인 '소라(Sora)'를 비롯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DALL-E 3', 오디오를 생성하는 '오디오 크래프트' 등
  - 2)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mini virtual summit'이 2024. 5. 한국과 영국에서 공동 개최될 예정입니다.



- 3) 'AI system' means a machine-based system designed to operate with varying levels of autonomy and that may exhibit adaptiveness after deployment and that, for explicit or implicit objectives, infers, from the input it receives, how to generate outputs such as predictions, content,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that can influence 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s (Art. 3(1)). 2023년 6월 채택된 유럽 의회 수정안의 AI 시스템 정의와 비교할 때 위 밑줄 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 4) 유럽 의회 수정안은 AI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목적을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AI system) means a machine-based system that is designed to operate with varying levels of autonomy and that can, for explicit or implicit objectives, generate outputs such as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that influence 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s (유럽 의회 수정안, Art. 3(1)).
- 5) 유상 또는 무상으로, AI 시스템 또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여 또는 개발된 AI 시스템 또는 범용 AI 모델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Art. 3(3)).
- 6) AI 시스템이 개인적인 비전문적 활동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권한 하에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Art. 3(4)). 순전히 개인적인 비전문적 활동의 일환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인 배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rt. 2(10)).
- 7) 제공자 또는 수입자를 제외한 공급망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EU 시장에서 AI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Art. 3(7)).
- 8) 다만,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rt. 2(8)).
- 9) 기계, 완구, 레저·개인용 선박, 승강기,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0) 대규모의 광범위한 데이터에 의하여 학습되고 결과물의 범용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시스템 모델을 의미합니다 (유럽 의회 수정안, Art.3(1c)).
- 11) 'general-purpose AI model' means an AI model, including where such an AI model is trained with a large amount of data using self-supervision at scale, that displays significant generality and is capable to competently perform a wide range of distinct tasks regardless of the way the model is placed on the market and that can be integrated into a variety of downstream systems or applications, except AI models that are used for research, development or prototyping activities before they are released on the market (Art. 3(63)).
- 12) 유럽 의회의 2023년 6월 수정안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제공자에 대해 모델 위험 관리, 데이터 적합성 검증, 에너지·시스템 효율성 보장, 기술 문서 및 사용 지침 작성,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의무를 부과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중 생성형 AI 제공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로, 투명성 의무, 위법 콘텐츠 생성 방지 의무, 저작권 관련 법률 준수 의무 및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학습데이터 이용 시 해당 사실의 문서화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13) FLOPs(floating point operations)란 부동 소수점 연산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총 연산량을 의미합니다.
- 14) 범용 AI 모델의 고영향력에 특정되는 위험으로서 그 도달 범위 또는 공중 보건, 안전, 공공 보안, 기본권 또는 사회 전체에 대한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EU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Art. 3(65)).
- 15) 유럽 집행위원회의 2023. 12. 12.자 인공지능 Q&A에 따르면, 위 기준에 따른 GPAI 모델에는 OpenAI의 GPT-4가 해당되고 Google DeepMind의 Gemini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16) 이데일리, 2023. 12. 12., 마크롱, "EU AI혁신 막을 것" 경고...AI 규제안 막판 변수 떠올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35837864&mediaCodeNo=257> 참조.

- 
- 17)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 18)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되고, 일반적으로 자체 감독을 사용하며, 최소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적용 가능하며, 다음 등과 같이 안보, 국가 경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이나 그러한 사항들의 조합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수 있도록 쉽게 수정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i) 비전문가가 화학, 생물학, 방사능 또는 핵(CBRN) 무기를 설계, 합성, 획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진입 장벽을 현저히 낮추는 것, (ii) 사이버 공격의 광범위한 잠재적인 타겟에 대한 자동화된 취약점 발견 및 악용을 통해 강력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 (iii) 기만 또는 난독화(obfuscation) 수단을 통해 인적 통제 또는 감독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것.
  - 1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1/29/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key-ai-actions-following-president-bidens-landmark-executive-order/>
  - 20) 초안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1/29/2024-01580/taking-additional-steps-to-address-the-national-emergency-with-respect-to-significant-malicious>
  - 21)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stablishing-a-pro-innovation-approach-to-regulating-ai/establishing-a-pro-innovation-approach-to-regulating-ai-policy-statement>
  - 2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regulation-a-pro-innovation-approach/white-paper>
  - 2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lls.parliament.uk/bills/3519>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1	 EU ETS 해운 포함 시행
1.5	 미국, 두번째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1.13	 대만, 제15대 총통 및 제11대 입법위원회 선거 라이칭더 총통 당선
1.15~1.19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
1.31	 EU CBAM 첫 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
1.16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 출범
1.18	 유럽의회, 불화온실가스(F-gases) 사용 규제 법안 최종 승인
1.23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
1.30~1.31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제10차 협상
2.1	 EU,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 최종 타협안 합의
2.2	 EU 이사회, EU '인공지능법(AI Act)' 타협안 최종 승인
2.6	 EU,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최종 타협안에 합의
2.9	 EU 이사회, 대형화물차(HDV) 등 배출가스 감축 개정안 최종 승인
2.12	 프랑스, 양자 컴퓨팅 및 일부 첨단 전자 시스템 등 수출 통제
2.14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국민협의회 선거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
2.15	 미국-유럽 5개국, '디지털세 301조 조사 중단' 합의 6월까지 연장
2.17	 제37차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2.17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전면 시행
2.18	 'EU 배터리 규정' 적용 *규정 세부 준칙 2024~2028 위임법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
2.20	 EU, '탄소제거(Carbon Removal) 인증제도' 도입 법안 최종 타협안 합의
2.20	 중국, 스페인산 쇠고기 규제 완화
2.21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6년까지 2년 연장 조치
2.21	 EU,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2.20~2.22	 한국-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 협상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2.20~2.22	 한국-EU, '디지털 통상협정' 2차 협상
2.22	 한미일,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대화' 첫 회의
2.22	 영국, EU에 이어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 방침 발표
2.22	 영국, 우크라이나 관련 50건 이상의 對러 추가 제재 발표
2.22	 라트비아, 러시아와 벨라루스 농산물 수입 금지 법안 통과
2.23	 미국 對러 제재 발표, 500여개 제재대상, 93개 수출통제대상 추가
2.24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배기량2천cc초과 승용차 등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2.2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효(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피지 등 5개국)
2.27	 러시아, 3월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수출 금지
2.26~2.29	 WTO 제13차 각료회의(MC 13)
2.28~2.29	 G20 재무장관회의
2.28	 유럽의회, 지리적 표시(GI) 보호 개정안 승인
2.29	 바이든, 미 국민 데이터 '우려국가' 접근 제한 행정명령 서명
3.1	 이란 총선
3.3	 IPEF 참여국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 설립
3.4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개정안에 합의
3.5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잠정 합의
3.6	 EU 이사회, EU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합의
3.6	 EU, '유럽단일공역에 관한 규정 개정안(SES 2+)' 잠정 합의
3.7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3.7	 한국, 스웨덴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 합의
3.7	 호주-베트남, '포괄적전략동반자'로 관계 격상
3.7~3.8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3.12	 독일, 산업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시행

##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3.12~3.13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3.13	 유럽의회, EU 노동 비자 간소화 위한 '싱글퍼밋(Single Permit Directive)' 개정안 최종 승인
3.15	 일본, 러시아와 연어 등 수산물 협상 타결
3.15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 발표
3.16	 EU 이사회,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3.17	 러시아 대통령 선거(블라디미르 푸틴 재선)
3.18	 독일-캐나다, 대서양횡단 청정 수소 수출입 MOU 체결
3.18	 EU 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승인
3.20	 EU 의회, 대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혜택 갱신
3.21	 유엔총회, "국제사회 합의로 안전한 시규제" 결의안 통과
3.22	 프랑스 상원, EU-캐나다 포괄경제무역협정(CETA) 비준 거부
3.22	 러시아-벨라루스 수입곡물에 관세부과 결정 발표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 2024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대선 · 의회선거 시나리오와 통상 리스크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3
2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1

### ❖ 2023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경쟁법 입법 동향: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	정환 변호사(광장) 김영서 변호사(광장) 정문경 연구원(광장)	2023.10
2	EU의 新통상법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허난이 연구위원 박수령 연구원 문희은 연구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5
3	[Special Issue Brief]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in a Changing World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3.2
4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 2022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22.9
2	[Special Issue Brief]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8
3	[Special Issue Brief]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해설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박정민 변호사(광장)	2022.7

4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재원 선임전문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5
5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2
6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이상준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he U.S.-China Strategic Confrontation on Trade: How Supply Chains Became Strategic National Resources under Trump, and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and Expand That Policy	J.Scott Maberry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2021.7
2	CPTPP와 국영기업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3	[Special Issue Brief]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양자 '디지털무역협정'의 등장과 최근 논의 동향	곽동철 교수(경북대학교)	2021.5
4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설동근 변호사(광장) 이준용 외국변호사(광장) 김상민 변호사(광장)	2021.4
5	중국 수출통제법을 통해 본 중국 통상환경 동향	김윤희 박사(KOTRA)	
6	[Special Issue Brief]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21.2
7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1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RCEP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2020.12

2	[Special Issue Brief]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시각 • 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US Trade Relations • Biding Time for Biden's New Trade Agenda	Joel D. Kaufman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이호석 박사(ECIPE)	2020.12
3	The Reshuffle of GVCs in the Era of US-China Decoupling and COVID-19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0.10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Global Value Chain 현황과 변화 전망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	
5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 교수(홍익대학교)	2020.7
6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 원장(중국증권행정연구원)	
7	[Special Issue Brief] The USMCA: An Introduction to the Rules of Origin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R.O. Cunningham 변호사 G.S. McCue 변호사 Z. Simmons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8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2020.3
9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정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2020.1
10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11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2019.7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중 원장(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19.7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 교수(와세다대학교)	2019.1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